

증빙불비 가산세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의 정규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정규증명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법법 §76 ⑤).

정규증명서류 미수취금액 · 사실과 다른 수취금액 × 2%

○ 가산세 적용제외 법인

다음의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120 ②)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②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범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법인의 거래 상대방,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법령 §120 ③, §158 ①).

- ① 법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함)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금융 · 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함)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②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 다만, 읍 · 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 ③ 소득세법상 사업자 및 부동산 · 사업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 정규증명서류의 범위

정규증명서류라 함은 다음의 증명서류를 말한다(법법 §116 ②).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신용카드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법령 §158 ③).
 - 가. 직불카드
 - 나.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 다. 선불카드(실지 명의가 확인되는 것에 한함)

한편, 다음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법령 §158 ④)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자적자원관리 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의 거래정보
 - (국기령 §65의 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함)

- ② 현금영수증
- ③ 세금계산서
- ④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규증명서류로 보지 않는다(법기통 116-158...1).

- ①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② 부가가치세법상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③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 **손금불산입된 접대비의 가산세 적용배제**

다음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된 접대비에 대해서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120 ④).

- ① 경조금 (기준금액 20만원)
- ② 경조금 외의 경우 (기준금액 1만원)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① ~ ④ (생략)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⑥~⑬ (생략)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와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 가.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 가. 삭제
 - 나. 삭제
 - 다. 삭제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

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7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자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공인인증서 발급 할인 서비스 안내

우리조합은공인인증서 발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원사가 매년 신규 또는 갱신하는 범용공인인증서 발급비용을 시중가격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아래와 같이 할인·공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아 래 -

1. 범용공인인증서 신규 및 갱신발급 비용

(VAT포함)

협약업체	문의처	시중가격	제공가격
한국전자인증(주)	1566-0566	110,000원	66,000원 (40%할인)
한국정보인증(주)	1577-8787		

※ 한국전자인증(주) 범용인증서 이용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텍스나라, <http://www.taxnara.co.kr>) 무료 이용

2. 이용방법

가. 조합 홈페이지(www.seolbi.com) → 공인인증센터

나. 조합 온라인지점

① 조합 온라인지점 → ②조합원지원서비스 메뉴 → ③ 공인인증센터 →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을 선택하여 메뉴 클릭

주) 1. 조합 홈페이지를 이용하지 않고 각 공인인증사의 홈페이지를 직접 이용 시 할인 혜택 없음

2. 발급 소요기간은 3~7일 정도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기존 한국전자인증(주) 또는 한국정보인증(주)의 범용공인인증서를 이용한 경우라도 설비조합을 통해 발급받을 경우 최초 1회는 “신규”로 신청해야 설비조합에서 정상적으로 “갱신(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4. 문의처

- 조합 지점(영업소)

- 기획조정실 정보지원팀(☎02-6240-1041~1044) 